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0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마약류 표시·광고 금지 권고 등	2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 표시·광고 금지 권고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안 제3조의2 신설),

식품, 담배, 화장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수거·검사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시 · 도지사-----

2. ~ 4. (현재와 같음)

<신 설>

<신 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제41조의2(제품의 수거·검사 등) ①

나. 검토의견

- (안 제3조의2: 마약류 표시·광고 금지 권고) 개정안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에 마약류 등을 표시·광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련 범죄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현행법은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업 및 제조업 허가, 제18조의 마약류 수출입 허가, 제21조의 마약류 제조업 허가 외에 별도로 영업 허가·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¹⁾,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제3항에서만 “영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²⁾, 개정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2.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자”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한 자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³⁾,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영업자”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마약류 관리와 중독 예방을 규율하는 현행법⁴⁾보다는 각 소관 물품에 대한 영업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예컨대, 식약처의 소관 물품 중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각 개별법을 통해 표시(기재)·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현행법 제17조제2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6),

개정안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대상에 마약류 취급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등 권고의 대상이나 요건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단서 생략)
 6. 삭제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안 제41조의2: 마약류 포함 우려 물품 수거·검사) 개정안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 담배, 화장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 해당 물품을 수거·검사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에서 규율하려는 물품의 범위가 i)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ii)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 iii)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임을 고려할 때, 각 개별 법과의 중복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15조의2에 따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대해서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해당 위해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등(수입식품 포함)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검사·수거할 수 있도록 함⁷⁾.

7) 「식품위생법」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 다음으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8조에 따라 식약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고, 제23조의2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화장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⁸⁾,

담배의 경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식품등의 무상 수거
 -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8)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
 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
 소·영업소·창고·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
 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
 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
 배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
 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식약처장은 각 개별법을 근거로 식품·화장품·담배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수거·검사를 할 수 있고, 식품과化粧품의 경우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수거·검사 및 공표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둘 경우 각 개별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각 개별법상 수거·검사 및 공표 관련 조항 >

구분	수거·검사	공표	근거법률
식품	가능	가능	「식품위생법」 제15조의2, 제22조, 「수입식품법」 제25조, 제35조 등
화장품	가능	가능	「화장품법」 제18조, 제23조의2 등
담배	가능	근거 없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편, 안 제41조의2제2호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천연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호는 “화장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규율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담배의 범위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고¹⁰⁾,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천연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하는 취지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임¹¹⁾.

1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자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마약류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개정안 제3조의2는 현행법에 명시된 바 없는 “영업자”라는 문구가 존재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주도 광범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금지 행위를 각 개별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피규제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 제41조의2와 관련하여 불법 마약류가 혼입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여 현재 검찰청·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수사기관이 관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

11) 박성훈의원안(2201749, 발의일: 24.07.15.), 김태년의원안(2202471, 발의일: 24.08.01.), 김선민의원안(2202563, 발의일: 24.08.05.), 남인순의원안(2202872, 발의일: 24.08.16.), 한지아의원안(2202898, 발의일: 24.08.16.), 전진숙의원안(2204643, 발의일: 24.10.10.), 송언석의원안(2205041, 발의일: 24.10.30.), 조은희의원안(2205523, 발의일: 24.11.13.), 김준혁의원안(2205037, 발의일: 24.10.30.), 최은석의원안(2205149, 발의일: 24.10.31.)

최근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였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24-11-27	상정/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	2025-02-1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	2025-02-18	상정